

-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에 청약 당첨되신 것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.
- 귀하가 청약하신 내용에 대해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되며, 자격 심사 과정에서 **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**
- 소명하지 못할 경우, 규칙 제57조 제 8항에 의거하여 당첨 취소되며,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**‘수도권 및 투기·청약과열지역 1년, 수도권외 6개월, 위축지역 3개월간 청약이 제한’**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고, 아래의 제출기한 내 당첨 유형별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

I 사전 자격확인 서류검수 일정 및 장소

접수기간	2022년 07월 28일(목) ~ 2022년 08월 03일(수) [7일간 진행] 10:00 ~ 16:00
방문대상	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(예비당첨자 포함)
장 소	당사 견본주택(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88, 쌍용 더 플래티넘 삼계 견본주택)
유의사항	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08.)이후 발행분에 한함.

I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 서류 ※ 추가서류는 대상에 해당되는 당첨자의 경우에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해당서류	발급구분	추가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-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본인 발행분) /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대체 가능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
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/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
	주민등록표등본[상세]	본인	-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하여 발급 ※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[상세]	본인	-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성명/관계 등을 “전체 포함”으로 발급 ※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	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표기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	- 주민등록표상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당첨자의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
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,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공단) 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)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
소득증빙서류	본인	-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-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 증명의 총결정세액이 “0”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(세)사실증명도 함께 제출	
추가 서류	소득세납부 입증 서류	본인	-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-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 증명의 총결정세액이 “0”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(세)사실증명도 함께 제출
	주민등록표등본[상세]	배우자	- 주민등록상 배우자 분리된 경우
	주민등록표초본[상세]	직계존속	-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,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 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‘전체 포함’으로 발급)
	입양관계증명서	본인(또는 배우자)	-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[상세]	직계존속	-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
	출입국사실증명원	세대원	-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(단신부임)
	혼인관계증명서[상세]	본인 및 직계비속	-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
	복무확인서	본인	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대리인 신청시	비사업자 확인각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- 견본주택 비치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
	부동산 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	-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- 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※ 발급 시 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위임장	청약당첨자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 비치
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당첨자	-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(본인 발행분) ※ 제3자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- 단,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, 이에 관한 공정증서
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/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,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증	
인장	대리인	- 대리인의 도장 또는 서명 가능	

※ 상기 모든 제출하는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7.08.)이후 발행분에 한함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 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I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소득 기준 구분	우선공급 (기준소득 50%)	130% 이하	~8,071,614원	~9,361,052원	~9,523,894원	~10,113,773원	~10,703,651원	~11,293,530원
	일반공급 (상위소득 20%)	130% 초과 ~ 160% 이하	8,071,615원 ~ 9,934,294원	9,361,053원 ~ 11,521,294원	9,523,895원 ~ 11,721,715원	10,113,774원 ~ 12,447,720원	10,703,652원 ~ 13,173,725원	11,293,531원 ~ 13,899,730원
추첨제 30%	소득기준 초과	160%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충족	9,934,295원~	11,521,295원~	11,721,716원~	12,447,721원~	13,173,726원~	13,899,731원~
	1인 가구	160%이하 160% 초과, 부동산가액 (3.31억원)충족	~9,934,294원 9,934,295원~	~11,521,294원 11,521,295원~	~11,721,715원 11,721,716원~	~12,447,720원 12,447,721원~	~13,173,725원 13,173,726원~	~13,899,730원 13,899,731원~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453,753) * (N-8), 100% 기준}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니다(단, 세대원의 실거·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÷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(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)

I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

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 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
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	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 (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)	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※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
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	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 ② 납세사실증명(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)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①,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/ 세무서

I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

구분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근로자 공통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
	일반근로자	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[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]	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	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 근로자	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② 해당직장
자영업자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	② 해당직장
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② 국민연금액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 ③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
	금년도 신규 사업자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② 국민연금액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또는 예정 신고서 (매입, 매출 기재된 부분) ③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	
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(원본)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/ 세무서 ②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*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* 행정복지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*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(직인날인)	* 해당직장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1)의 경우 ②전년도 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을 반드시 제출 1)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)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	① 견본주택 비치 ② 국세청 홈택스	
기타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)	① 출산 전·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 [재직증명서 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명시 서류 제출]	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	